

의안번호	2215516
의 퇴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5.12.29.
추계번호	25D7151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하고,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조원 등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총 39조원(연평균 3조 9,000억원)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6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출연금모 상향 및 유효기간 폐지 (안 제23조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삭제)	10,000	20,000	30,000	40,000	40,000	390,000	39,000
	2032	2033	2034	2035	2036		
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	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)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(유효기간) 제2조제2항 삭제	-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추가 확보 : 정부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되, 2027회계연도에는 2조원, 2028회계연도에는 3조원, 2029회계연도에는 4조원으로 함 - 2031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	의무규정
2	안 제26조의2(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자문기구 설치)	-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-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3조(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재원)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(유효기간) 제2조제2항 삭제	○	-
2	안 제26조의2(지방 소멸대응기금 관련 자문기구 설치)	×	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자문기구의 규모, 위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회계연도마다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함에 따라 증액된 정부출연금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현행법은 정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1조원씩¹⁾ 2031년까지²⁾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증액하되, 2027회계연도에는 2조원, 2028회계연도에는 3조원, 2029회계연도에는 4조원으로 하고, 2031년까지로 되어있는 유효기간을 폐지하려는 것임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유효기간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으로 함

1) 현행법 제23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)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출연금 1조원
2.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

2)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① (생략)

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39조원임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총 44조원임
 -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총 5조원이 발생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정부출연금에서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조원 등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39조원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6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(A)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2032	2033	2034	2035	2036	
	0	0	0	0	0	
개정안에 따른 정부출연금(B)	2027	2028	2029	2030	2031	440,000
	20,000	30,000	40,000	50,000	50,000	
	2032	2033	2034	2035	2036	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(C=B-A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390,000
	2027	2028	2029	2030	2031	
	10,000	20,000	30,000	40,000	40,000	
	2032	2033	2034	2035	2036	
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assembly.go.kr